

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0. 1. 13
- 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0. 1. 13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(2000. 1. 19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수도행정과장 최중하)

가. 제안이유

- 수자원공사의 원·정수 구입비가 96.대비 총 96.4%로 인상되어 98.총괄원가계산에 의하면 급수수익보다 87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어 요금인상으로 부족되는 재원을 충당하고 적자경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,
- 또한 환경부의 물수요관리종합대책에 의거 수도요금 2001년까지 100%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임.

나. 주요골자

- 업종별 인상내용
  - 가 정 용 : 평균 27.5%
  - 업 무 용 : 평균 22.9%
  - 영 입 용 : 평균 24.3%
  - 육탕 1종 : 평균 17.3%
  - 육탕 2종 : 평균 20.0%

다. 첨부

- 부천시요금조정계산표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원·정수비가 96년 대비 총 96.4% 인상되었는데 3년에 걸쳐 인상된 것인가?	○ 96. 97. 98년 3년에 걸쳐 인상된 것임.
○ 수도요금을 2001년까지 100%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도 인상을 하여야 하나?	○ 100% 현실화를 위해서는 2001년에도 23.7% 인상하여야 함.

- 이번에 가정용이 27.5% 인상됨으로 인하여 시민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대책은?
- 현재 적자폭은 얼마이며, 인상시 적자폭을 얼마 정도 줄일 수 있는가?

- 사전에 시민단체에 보고를 하였으며 시민단체에서도 27.5%로 인상이 적정하다고 하였음.
- 금년까지 106억원 정도 적자이며, 금번 인상으로 56억원 정도 감소됨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6. 수정안의 요지

- “붙임 참조”

7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관련 제277호
의결년월일	2000. 1. 21 (제76회)

제안년월일 : 2000. 1. 19

제안자 : 건설교통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수자원 공사의 원·정수 구입비가 96년 대비 총 96.4% 인상으로 2000년 총괄 급수 수익보다 약 106억원의 적자로 부득이 부천시에서는 상수도사업의 적자를 상수도 요금인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,
- 이미 1999년 7월 한차례 인상된 바 있으며 금번에 인상시 6개월만에 또다시 인상하는 것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2000년 7월부터 인상토록 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줄이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수도요금 인상시기를 2000년 3월에서 2000년 7월로 연기하고자 부칙을 일부 개정

###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부칙 중 “2000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을” “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”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부 칙	부 칙	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.	..... .....2000년 3월..... .....	..... .....2000년 7월..... .....

###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관련 제277호
의결년월일	2000. 1. 21 (제76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1. 13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수자원공사의 원·정수 구입비가 96년 대비 총 96.4% 인상되어 98. 총괄원가계산에 의하면 급수수익보다 87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어 요금인상으로 부족되는 재원을 충당하고 적자경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,
- 또한 환경부의 물수요관리종합대책에 의거 수도요금을 2001년까지 100%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임.

□ 주요골자

- 업종별 인상내용
  - 가 정 용 : 평균 27.5%
  - 업 무 용 : 평균 22.9%
  - 영 업 용 : 평균 24.3%
  - 육탕 1종 : 평균 17.3%

○ 옥탕 2종 : 평균 20.0%

□ 첨부

○ 부천시요금조정계산표

[수정안 포함]

###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수도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 중 “별표 2”를 “별지”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.

“별지”

(별표 2)

업종별요금표

(단위 : m<sup>3</sup>/원)

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		업종별 사용량 요금			
계량기 구경별	요 금	업 종 별	사 용 량	요 금	
13m/m	620	가 정 용	0~10	210	
			11~20	280	
			21~30	380	
			31~40	550	
			41~50	710	
20m/m	1,300	가 정 용	51 이상	890	
			업 무 용	0~20	350
				21~50	440
				51~100	520
				101~300	590
301 이상	670				
25m/m	2,010	영 업 용	0~30	600	
			31~50	770	
			51~100	940	
			101 이상	1,320	
32m/m	3,590	옥	1종	0~200	330
				201~300	380
				301~500	560
				501 이상	650
40m/m	4,900	탕	2종	0~200	700
				201~300	1,070
				301~500	1,790
				501 이상	2,400
50m/m	8,590	용	2종	0~200	700
				201~300	1,070
				301~500	1,790
				501 이상	2,400
75m/m	16,270	용	2종	0~200	700
				201~300	1,070
				301~500	1,790
				501 이상	2,400
100m/m	27,120	용	2종	0~200	700
				201~300	1,070
				301~500	1,790
				501 이상	2,400
150m/m	60,220	용	2종	0~200	700
				201~300	1,070
				301~500	1,790
				501 이상	2,400
200m/m	97,000	용	2종	0~200	700
				201~300	1,070
				301~500	1,790
				501 이상	2,400
250m/m	143,870	용	2종	0~200	700
				201~300	1,070
				301~500	1,790
				501 이상	2,400
300m/m	200,830	용	2종	0~200	700
				201~300	1,070
				301~500	1,790
				501 이상	2,400
350m/m	251,580	용	2종	0~200	700
				201~300	1,070
				301~500	1,790
				501 이상	2,400
400m/m	282,910	용	2종	0~200	700
				201~300	1,070
				301~500	1,790
				501 이상	2,400

신·구조문 대비표

(단위 : m<sup>3</sup> / 원)

현행					개정안						
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		업종별 사용량 요금			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		업종별 사용량 요금				
계량기 구경별	요금	업종별	사용량	요금	계량기 구경별	요금	업종별	사용량	요금		
13m/m	620	가정용	1~10	<u>170</u>	.....	.....	.....	.....	<u>210</u>		
			11~20	<u>220</u>					<u>280</u>		
			21~30	<u>290</u>					<u>380</u>		
			31~40	<u>400</u>					<u>550</u>		
			41~50	<u>510</u>					<u>710</u>		
20m/m	1,300	가정용	51 이상	<u>640</u>	.....	.....	.....	<u>890</u>			
25m/m	2,010		업무용	1~20				<u>300</u>	.....	.....	<u>350</u>
32m/m	3,590			21~50				<u>360</u>			<u>440</u>
40m/m	4,900			51~100				<u>420</u>			<u>520</u>
50m/m	8,590			101~300				<u>480</u>			<u>590</u>
75m/m	16,270	301 이상		<u>540</u>	<u>670</u>						
100m/m	27,120	영업용	1~30	<u>500</u>	.....	.....	.....	.....	<u>600</u>		
			31~50	<u>630</u>					<u>770</u>		
			51~100	<u>760</u>					<u>940</u>		
			101 이상	<u>1,050</u>					<u>1,320</u>		
200m/m	97,000	부탕용	1종	1~200	<u>290</u>	.....	.....	.....	<u>330</u>		
				201~300	<u>330</u>				<u>380</u>		
				301~500	<u>480</u>				<u>560</u>		
				501 이상	<u>550</u>				<u>650</u>		
250m/m	143,870	부탕용	2종	1~200	<u>600</u>	.....	.....	<u>700</u>			
300m/m	200,830			201~300	<u>900</u>			<u>1,070</u>			
350m/m	251,580			301~500	<u>1,500</u>			<u>1,790</u>			
400m/m	282,910			501 이상	<u>1,980</u>			<u>2,400</u>			

58 (제76회-제2차)

1. 요금조정계산표

조 상 전							조 상 후							전 후 대 비 (%)		
업종별	단계별 (톤)	요금부과 급수권	요금 (원/톤)	톤	조정 총액 (천원)	톤당 요금 (원/톤)	업종별	단계별 (톤)	요금부과 급수권	요금 (원/톤)	톤	조정 총액 (천원)	톤당 요금 (원/톤)	증 감 액		인상율 (%)
														조정액 (천원)	톤당 요금 (원/톤)	
합계		1,412,853		74,248,662	22,898,616		합계		1,412,853		74,248,662	28,776,279		5,877,663		25
가정용	소계	1,096,746		54,383,645	11,739,524		가정용	소계	1,096,746		54,383,645	14,971,324		3,231,800		27
	0~10	435,669	170	25,563,712	4,345,831	170	0~10	435,669	210	25,563,712	5,368,379	210	1,022,548	40	23	
	11~20	370,245	220	19,846,537	4,366,238	220	11~20	370,245	280	19,846,537	5,557,030	280	1,190,792	60	27	
	21~30	184,080	290	6,758,562	1,959,983	290	21~30	184,080	380	6,758,562	2,568,254	380	608,271	90	31	
	31~40	65,200	400	1,261,693	504,677	400	31~40	65,200	550	1,261,693	693,931	550	189,254	150	37	
	41~50	27,226	510	363,191	183,227	510	41~50	27,226	710	363,191	257,865	710	72,638	200	39	
	51~	14,326	640	589,950	577,568	640	51~	14,326	890	589,950	525,865	890	148,297	250	39	
업무용	소계	146,657		8,953,256	4,138,570		업무용	소계	146,657		8,953,256	5,076,966		948,396		22
	0~20	61,217	300	1,222,920	366,876	300	0~20	61,217	350	1,222,920	428,022	350	61,146	50	16	
	21~50	43,525	360	1,102,721	396,980	360	21~50	43,525	440	1,102,721	485,197	440	88,217	80	22	
	51~100	25,150	420	884,240	371,381	420	51~100	25,150	520	884,240	459,805	520	88,424	100	23	
	101~300	12,461	480	1,801,496	864,718	480	101~300	12,461	590	1,801,496	1,062,883	590	198,165	110	22	
	301~	4,304	540	3,941,879	2,128,615	540	301~	4,304	670	3,941,879	2,641,059	670	512,444	130	24	
	영업용	소계	165,217		7,337,097	6,066,590		영업용	소계	165,217		7,337,097	7,540,884		1,474,294	
0~30	62,485	500	1,671,714	835,837	500	0~30	62,485	600	1,671,714	1,003,028	600	167,171	100	20		
31~50	47,454	650	787,807	496,318	650	31~50	47,454	770	787,807	606,611	770	110,293	140	22		
51~100	36,673	760	1,334,620	1,014,311	760	51~100	36,673	940	1,334,620	1,254,543	940	240,232	180	23		
101~	18,605	1,050	3,542,956	3,720,104	1,050	101~	18,605	1,320	3,542,956	4,676,702	1,320	956,598	270	25		
욕탕용 (1종)	소계	4,079		1,242,166	589,427		욕탕용 (1종)	소계	4,079		1,242,166	691,443		102,016		17
	0~200	1,385	290	233,972	67,852	290	0~200	1,385	330	233,972	77,211	330	9,359	40	13	
	201~300	1,018	330	96,915	31,982	330	201~300	1,018	380	96,915	36,828	380	4,846	50	15	
	301~500	920	480	165,858	79,612	480	301~500	920	560	165,858	92,880	560	13,268	80	16	
	501~	756	550	745,421	409,981	550	501~	756	650	745,421	484,524	650	74,543	100	18	
욕탕용 (2종)	소계	106		20,275	27,719		욕탕용 (2종)	소계	106		20,275	33,265		5,546		20
	0~200	32	600	5,417	3,250	600	0~200	32	700	5,417	3,792	700	542	100	16	
	201~300	26	900	2,456	2,205	900	201~300	26	1,070	2,456	2,622	1,070	417	170	18	
	301~500	24	1,500	4,800	7,200	1,500	301~500	24	1,790	4,800	8,592	1,790	1,392	290	19	
	501~	24	1,980	7,698	15,064	1,980	501~	24	2,400	7,668	18,259	2,400	3,195	420	21	
공업용	소계	48		2,312,223	346,786		공업용	소계	48		2,312,223	462,397		115,611		33
	0~100	24	140	4,800	672	190	0~100	24	190	4,800	912	190	240	50	35	
	101~	24	150	2,307,423	346,114	150	101~	24	200	2,307,423	461,485	200	115,371	50	33	